

 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 9월 22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			
배 포 일	2020. 9. 21. / (총 2매)			
아동복지정책과 (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개편)	과 장	박 재 찬	전 화	044-202-3410
	담 당 자	진 보 라		044-202-3419
아동학대대응과 (아동학대조사체계 정비)	과 장	조 신 행		044-202-3380
	담 당 자	박 옥 진		044-202-3384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[9.22]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 명확화 등 -

- ☐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아동복지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(화)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☐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「아동복지법」 (2020.4.7. 공포 / 2020.10.1. 시행 예정)이 개정되어,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.
- 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(안 제23조)

-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,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.
-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·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*하도록 규정하였다.

* 감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을 마무리하는 사례종결을 포함함

②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절차 규정 (안 제25조의2)

-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*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,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
*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,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,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근거 등을 포함하여 수립

-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*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,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피해아동 및 그 가족,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·교육·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

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(안 제13조의2~3)
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,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-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< 별첨 >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